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가족정책과)
- 제안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36)

2. 제안이유

-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로 함
- 나. 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마. 입양축하금 등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양식, 지원대상, 결정통지서 및 환수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9. 18. ~ 10. 10.(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리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변경하고,
 -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 하였고,
 -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입양가정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까지는 입양축하금 등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결정통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해외입양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 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5개월 진행한 후 국내 입양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해외 입양을 진행하게 됨. 아직도 한국에는 2~3천 명가량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고, 입양되는 아이들이 이 중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입양은 아동이 사랑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입양가족은 가족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양육 이후까지 사회적 편견과 복합적인 양육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기존에는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이 입양 전 과정을 관리하였으나 지난 2025년 7월 19일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운영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국내 입양과 가정위탁 등이 활성화되어야 새로운 공적 아동
보호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으며 과거의 기록들이 가치 있는
미래로 전환될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정책과	송희옥 (8910)	정월순 (8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가. 상위법령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 정비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재배정되어 교부받는 예산(국비, 시비)으로 마포구 세출 증가와는 무관함

4. 작성자: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정월순(☎ 3153-8611)

참고자료

1. 관계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리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

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 상담 ·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관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현황

(2024년 기준)

계(월)	0~18세 미만	18세 이상	비고
64명	64명	-	누적인원: 783명

(2025. 9. 기준)

계(월)	0~18세 미만	18세 이상	비고
57명	57명	-	누적인원: 528명

3. 입양가정 지원현황 (2024년도)

- ▶ 지원액: 금226,048,000원(국비: 102,819,200원, 시비: 123,228,800원)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총계	866명	226,048,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783명	157,200,000원	국비 40% 시비 60%
장애인양아동 양육보조금	24명	15,048,000원	
장애인양아동 의료비	3명	2,600,000원	
심리치료비	5명	800,000원	
입양축하금	2명	4,000,000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	1명	400,000원	
입양기관 입양알선 및 철회비용	0명	0원	
고등학생 교육비(분기별 50만원)	4명	2,000,000원	시비(1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월 1백만원)	44명	44,000,000원	국비 70% 시비 30%